

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. 15.

제출자 : 안산시장

개정이유

-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규정 정비해 주민 불편·부담 완화
 -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조례 규정 개정토록 시달

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위반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입법예고 결과 : 의견있음(붙임4)

- 입법예고 : 2015. 11. 10. ~ 11. 30.(20일간)

방침결재 : 붙임(붙임5)

< 불임 1 >

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녹색제품 구매의무)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환경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강상봉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계장 김선미
	담당자 성명·전화	안준식 (행정 2613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“구매실적”은 법 제9조에 따라 <u>시장이</u>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.</p> <p>5. ·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구매실적”은 법 제9조에 따라 <u>안산시장</u> (<u>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</u>) -----</p> <p>-----</p> <p>5. ·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시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하부 행정기관</p> <p>2.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<u>공기업</u></p> <p>3.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</p>	<p>제4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.</p>
<p>제9조(녹색제품 구매 의무)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.</p> <p>1.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</p> <p>2.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</p> <p>3.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</p>	<p>제9조(녹색제품 구매 의무)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</p>
<p>제10조(녹색제품 구매예외)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“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</p> <p>2.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3.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</p> <p>4.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</p> <p>5.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.</p>	